



사우디아라비아

연내 WTO 가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

세계최대의 산유국임과 동시에 WTO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 중 러시아 다음의 경제규모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는 관세율 인하 등 상당한 시장개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WTO에 가입하지 못하여 해외시장 접근 등에 있어 WTO 회원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동국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시장 확대와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GCC국가¹⁾처럼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편입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부터 WTO 가입을 추진해 왔다.

1993년 6월 GATT(WTO의 전신) 가입 신청과 같은 해 7월 21일 GATT내 사우디 가입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로 가입협상이 정식으로 개시된 아래 사우디

아라비아는 일본, 호주, 한국, 캐나다 등과 양자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등 WTO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 EU와는 금융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및 농업·수출보조금과 관련해서 의견을 보여 협상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2003년 8월 EU와의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미국과도 양자간 협상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마무리 단계

WTO 가입을 위해서는 WTO 회원국 중 양자협상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상이 모두 타결되어야 하는데, 협상진행에 따른 변수는 남아 있으나 양자협정

1)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 국가로 구성된 걸프만 주변 산유국의 협력기구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국은 모두 WTO 회원국임.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04년 내 사우디의 WTO 가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 12월 21일 기준으로 31개 협상 대상국 가운데 24개국²⁾과의 협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나머지 7개국과의 협상진행 상황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가입절차 완료 전에 가입과 관련된 협상서류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협상내용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간 협정 미체결국 대부분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장개방과 관계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양자협상의 체결시 WTO의 일괄타결 조항³⁾을 수락한다는 양해(understanding)가 포함되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규 가입국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특정부분을 회피할 수는 없다.

파와즈 알알라미(Fawaz al Alamy) 사우디 상무부 차관은 최근 3년간 자국이 법령의 개·폐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로운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Law)과 보험법(Insurance Law)을 비롯한 27개 법안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13개 신규 법

규들도 조만간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하는 협상조건들이 시장접근과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의 근간이 되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현재 진행중인 협상도 지체없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입 작업반회의(work - ing party's meetings)와 정부간 양자협상을 거쳐 완성된 작업반 보고서, 가입의 정서 초안, 양자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일정은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의정서로 채택된 후 회원국 2/3가 찬성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가입의정서가 서명되고 이를 WTO에 제출하면 30일 이 지난 후 공식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주요 양자협상 내용

- 한국⁴⁾

한·사우디간 제3차 협상이 2000년 7월 5일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어 우리의 양허요청에 대한 양자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양국간 협상에는 총 2년이 소요되었다. 동 협상에서 양국은 섬유, 철강, 가전제품, 자동차 등 사우디에 대한 35개 주요 수출품목(1999년 기준 수출액 300만 달러 이상)의 양허관세율을 20~25% 수준에서 평균 1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합의하

2) 협상이 완료된 24개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파키스탄, 한국, 우루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체코, 슬로바키아, 유럽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폴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키르기즈, 파라과이 등임.

3) Single Undertaking Clause: 어떠한 한 분야도 타결이 안 되면 전체협상이 타결될 수 없는 trade round의 협상 방식으로서 UR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WTO 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한꺼번에 수락하는 원칙임. 따라서 부분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음.

4) 2000년 7월 6일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였다. 한국은 주요 에너지수입국인 사우디 와의 관계를 고려, 양허요청 품목수를 실질적 이득이 있는 47개로 제시하였고, 2000년 7월 방한 중 가입협상의 조기 타결을 희망했던 파키(Faqeesh) 사우디 상무부 장관이 우리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함에 따라 양자협상이 타결되었다. 주요 타결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87류), 전기제품(85류),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84류), 섬유류(54류), 화학제품(29류)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들이었다.

• 일본

일본도 에너지수입국이라는 특수관계를 감안, 2000년 1월 16일 16개 품목(HS 8단위)의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선에서 양자협상을 타결하였다.

• 미국

2003년 7월 31일 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사우디 무역산업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掌하는 무역투자위원회(Council on Trade and Investment)를 신설하였다. 현재 양국의 교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2003년 8월 31일 하심 야마니(Hashim A. Yamani)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패스칼 라미(Pascal Lamy) EU 무역위원회 의장의 서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와 EU간 시장접근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WTO 가입과 동시에 WTO가 제시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 관련 제 규칙을 준수하고 특정 식품류의 수입과 가스의 이중가격제를 폐지하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12%로 낮추고, 통신, 건설, 은행, 보험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WTO 가입으로 인한 파급 효과 를 듯

WTO에 가입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도 교역상대국의 차별적인 무역조치를 회피하고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이익이 기대됨은 물론이고, 무역분쟁 시에도 WTO 협정에 위반되는 반덤핑 조치나 상계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피하고 WTO 협정체제 내에서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영화 촉진, 외국인투자 증대, 수입제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효율성 강화 등 시장체제로의 구조조정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WTO 회원국에 가입함으로써 GCC-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내 WTO 가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WTO사무총장도 연내 가입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규 환】